

의안번호	2215199
의 퇴 인	위성곤의원
회 답 일	2026.3.24.
추계번호	25D6889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48억 8,000만원(연평균 9억 7,6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인건비 등	791	784	808	833	858	4,074	815
사업비	155	158	161	164	168	806	161
합계	946	942	969	997	1,026	4,880	97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6조의4 (미래전략특별위원회) 신설	국회는 「국가미래전략기본법」에 관한 사항, 국가의 장기적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에 속하는 사항 등 국가의 장기적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둔(제1항) 미래전략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5명으로 하며,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함(제2항)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. 다만,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, 보임되거나 개설했던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(제3항) 미래전략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함(제5항)	의무규정
2	안 제46조의5 (국회미래연구원과의 협력)	미래전략특별위원회는 그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「국회미래연구원법」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에 미래환경 전망, 시나리오 및 정책대안에 관한 전략분석 연구, 정책 시뮬레이션·영향분석 및 장단기 과제의 정합성 검토,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의 분석 및 의제화 지원, 해외 입법·제도 비교, 국제협력 동향 등 참고연구, 그 밖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의결로 요청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요청할 수 있음(제1항) 국회미래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연구계획과 일정을 미래전략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, 정해진 기한까지 연	재량규정 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일정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(제2항)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협력의 구체적 절차·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함(제5항)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46조의4 (미래전략특별위원회) 신설	○	—
2	안 제46조의5 (국회미래연구원과의 협력)	×	현재 「국회미래연구원법」에 규정된 국회미래연구원의 사업은 미래 환경의 예측·분석 및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도출, 국내외 대학·연구기관과의 상호 교류 협력임. 개정안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의 업무는 미래환경 전망, 시나리오 및 정책대안에 관한 전략분석 연구, 정책 시뮬레이션·영향분석 및 장단기 과제의 정합성 검토,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의 분석 및 의제화 지원, 해외 입법·제도 비교, 국제협력 동향 등 참고연구, 그 밖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의결로 요청하는 사항 등의 업무임. 현행법과 비교할 때, 개정안에 따라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의 분석 및 의제화 지원, 해외 입법·제도 비교, 그 밖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의결로 요청하는 사항 등 추가 업무 발생이 예상되며, 신규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추가재정소요 발생 가능 다만, 신규업무의 규모, 그에 따른 인력증원규모를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라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신설할 경우, 의원의 입법 및 예산심사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, 기본경비 등 추가재정소요 발생
-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신설에 따른 증원인력은 위원회의 사무를 고려하여 인력 규모를 추정함¹⁾
 - 개정안은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「국가미래전략기본법」에 관한 사항, 국가의 장기적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에 속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 - 미래전략특별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와 비교할 때, 심사할 법률안의 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, 예·결산 예비심사 업무도 포함하고 있지 않음
-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신설에 따라 회의공간 및 사무실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, 국회 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이에 대한 재정소요는 추계에서 제외함²⁾
-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신설(안 제46조의4 신설)

- 추계에서는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데 따른 증원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및 사업비를 추계함
-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신설에 따른 증원인력은 위원회의 사무를 고려하여 특별위원회 정원인 6명으로 가정함
 - 증원인력 6명에 대한 직급별 배분은 「국회사무처 직제 시행규칙」의 특별위

1) 국회의원 수는 「공직선거법」 개정 사항으로, 본 추계에서는 국회의원 수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

2) 국회 예산 중 ‘국회청사유지및관리(2033-300)사업’ 예산으로 2025년 575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신설에 따른 회의실 및 사무공간 확보에 별도의 추가재정소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

위원회의 직급별 구성을 고려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가정함

[표 2]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신설에 따른 증원인력의 직급별 구성 추정

(단위: 명)

	수석전문위원	전문위원	3~4급	4~5급	6	7	8	9	합계
미래전략특별위원회	1	1	0	1	1	0	1	1	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위원회 지원 공무원 6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, 기관부담금, 기본경비, 자산취득비를 추계함

- 인건비는 2026년 국회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를 참고³⁾하여, 최근 3년간 평균 공무원임금상승률 3.0%를 적용하고, 기관부담금과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기관부담 효율, 공무원 1인당 자산취득비를 적용하며, 기본경비는 국회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(8.2%)을 고려하여 산출하면 다음 표와 같음
 - 공무원 보수는 기본연봉 및 봉급에 최근 3년(2024~2026)간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3.0%를 적용하고, 수당(입법수당 등)은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
 - 기관부담금(공무원연금,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)은 공무원 보수에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효율⁴⁾을 적용하여 산출함
 - 자산취득비는 2027년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여 증원인력 6명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(2026년 1월)한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 단가⁵⁾를 곱하여 산출함

3) 수석전문위원 및 4~5급은 기본연봉, 입법수당, 정액급식비, 직급보조비, 연가보상비를 포함한 금액이며, 6~9급은 봉급, 입법수당, 정액급식비, 직급보조비, 연가보상비, 성과상여금, 시간외 근무수당, 정근수당, 정근수당가산금, 명절수당을 포함한 금액임

4)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 효율(2026. 1.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0
기관부담률(%)	13.130	13.194	13.286	13.380	13.476

5) 2027년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는 5,080,000원임

[표 3] 증원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보수	627	646	666	685	706	3,330
기관부담금	82	85	88	91	94	440
기본경비	51	53	55	56	58	273
자산취득비	30	0	0	0	0	30
합계	791	784	808	833	858	4,07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(사업비) 미래전략특별위원회의 사업비는 상임위원회 중 가장 규모가 적은 정보위원회 2026년 운영경비의 평균 1억 5,500만원⁶⁾으로 가정하고, 동 사업비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(2026년 1월)한 소비자물가 상승률⁷⁾을 적용하여 추계하면 다음 표와 같음

[표 4]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사업비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사업비	155	158	161	164	168	80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추계결과

-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48억 8,000만원으로 추계됨

6) 2026년 특별위원회의 운영경비는 37억 4,500만원으로 비상설특별위원회의 구성·활동을 고려한 예산으로 본 추계의 대상이 되는 미래전략특별위원회의 특성과는 차이가 있어, 본 추계에서는 정보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참고하였음. 참고로, 15개 상임위원회 2026년 평균 운영경비는 2억 1,900만원임

7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5.4월)

	2026	2027	2028	2029	2030
소비자물가상승률(CPI, %)	1.9	2.0	2.0	2.0	2.0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인건비 등	791	784	808	833	858	4,074
사업비	155	158	161	164	168	806
합계	946	942	969	997	1,026	4,88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신설에 따른 인력증원 규모는 특별위원회 규모, 사업비는 정보위원회 수준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, 증원인력 및 사업비, 다른 위원회로부터의 인력 재배치 등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